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 건 21진정0507900 정신의료기관의 임의 동의입원 처리 등에 의한
인권침해

진 정 인 ○○○○

피진정인 ○○○○시 ○○○○원장

주 문

1. 피진정인에게,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또는 보호의 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합니다.
2. 국립정신건강센터·국립나주병원·국립부곡병원·국립공주병원·국립춘천병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의·의결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 유

1. 진정 요지

2021. 6. 22.경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혼자 구급차를 타고 ○○○○시 ○○○○원(이하 '피진정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을 방문했다. 그런데 다음 날 피진정병원 소속 직원은 진정인에게 정신과 동의입원 서류에 서명하게 한 후 보호자 연락처를 적으라고 했고, 이후 부친과 공모하여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이하 '보호입원'이라 한다)으로 입원유형을 변경하였다. 진정인의 의사에 반해 동의입원 및 보호입원 처리하고 폐쇄병동에 감금한 것은 부당 강제입원에 해당한다.

2. 당사자 및 관계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진정인은 2021. 6. 21. 응급실에 혼자 내원하여 “입과 코에서 벌레가 나온다”, “대가리 박아라, 죽어라 등의 환청이 들린다”는 말을 하였고, 이에 피진정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진정인에 대한 입원치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2021. 6. 22. 11:56경 진정인의 부친(참고인)과 동의입원 추진을 유선으로 협의하고 참고인의 내원을 기다렸다. 그런데 같은 날 13:00경 진정인이 ‘나 강제입원 안 해, 집에 갈 거야’라며 입원을 거부했고, 14:00경 응급실을 배회하며 ‘정신과 과장 오라 그래, 보호자도 없는데 무슨 보호자를 찾는다 그래’라며 흥분상태를 보였다. 이에 진정인에게 안정제를 투여하고 수면하도록 한 후 참고인이 도착한 15:16경 진정인에 대한 동의입원 절차를 진행했다.

동의입원의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 제42조(동의입원)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에 따라 보호입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피진정병원은 이러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정인의 입원유형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참고인

2021. 6. 21. 진정인이 왜 혼자서 피진정병원에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당일 응급실 직원으로부터 보호의무자가 와야 할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 다음 날인 6. 22. 병원에 도착했더니 의사가 입원치료가 필요할 것 같으며 보호입원을 신청하라고 했다. 참고인을 제외한 법적 보호의무자인 진정인의 할머니가 지방에 거주하여 당일 서명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동의입원 신청 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면 된다고 하여, 직원 안내에 따라 6. 22. 동의입원 신청서 작성하였고, 다음날 6. 23. 보호입원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주장, 피진정인 주장 및 제출자료,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진정인은 환청과 망상 증상으로 2021. 6. 21. 피진정병원 응급실을 혼자 방문했고, 다음 날인 6. 22. 해당 병원 소속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면

담 후 동의입원하였다가 6. 23. 보호입원으로 전환되었다.

나.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 응급실에 방문하였다가 의도치 않게 정신과 폐쇄병동으로 입원되었다고 주장하고, 피진정인은 입원절차 및 사유에 있어 불법은 없었다고 항변한다.

다. 참고인이 피진정병원 응급실에 방문했을 때 의사가 진정인에 대한 보호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으나, 다른 보호의무자가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당일 보호입원 신청이 어려웠다. 피진정병원 직원의 안내에 따라 6. 22. 동의입원신청서에 서명하였고, 6. 23. 다른 보호의무자와 동행하여 보호입원신청서에 다시 서명하였다.

라. 피진정인 제출자료에 따르면, 진정인은 2021. 6. 22. 13:00경 정신과 입원을 거부하며 흥분상태를 보여 14:00경 안정제 주사를 맞았다. 입원신청서는 '자의입원' 또는 '동의입원' 여부를 체크하도록 되어 있으나, 당일 진정인의 입원신청서는 자필이 아닌 '동의입원'으로 기 체크된 상태로 출력되었으며, 출력한 시간은 12:51경으로 확인된다. 해당 동의입원신청서가 출력된 시간은 '진정인이 입원을 거부하였다'고 의료기록에 기재된 시간보다 10분 앞서 있어, 진정인은 입원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마. 한편, 피진정병원이 이 사건 참고인 등에게 서명받기 위해 보호입원신청서를 출력한 날짜 및 시간은 2021. 6. 23. 15:16으로 확인된다. 그런데 '정신건강복지법에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정인이 퇴원신청서를 작성한 시간은 같은 날 16:00로 확인된다. 다시 말해, 진정인의 보호입원신청서는 진정인의 퇴원신청이 있기 전에 이미 출력된 것이다.

바.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2021. 7. 21. 진정인의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 대하여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입원과정이 적법하고 환자의 입원치료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입원유지 의견을 제출하였다.

5. 판단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1항은 정신질환자의 입원신청이 있고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정신의료기관의 동의입원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동의입원환자가 퇴원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퇴원을 시키되, 다만 당해 환자가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퇴원등을 신청한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입원 필요성 진단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등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즉, 동의입원은 입원하고자 하는 사람의 자발적 입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동의입원을 보호입원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환자의 퇴원요청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진정인의 동의입원과,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이 적정했는지에 대한 판단은 진정인이 입원치료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가 있었는지 그 절차가 합리적·합법적이었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진정인은 망상 및 환청 치료를 위해 피진정병원에 스스로 내원한 사실은 있으나 입원을 거부하다 안정제 주사를 맞을 만큼 폐쇄병동으로의 입원을 완강히 거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피진정인은 그러한 사실을 알고도 진정인에게 동의입원신청서에 서명을 받고, 진정인이 퇴원을 신청하기도 전에 보호입원으로의 전환을 준비하였다.

비록 피진정인이 진정인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정신과 치료를 위해 폐쇄 병동으로의 입원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그 행위가 환자에 대한 인신구속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절차는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진정인의 자유의사 없이 임의로 동의입원 처리하고 이후 보호입원으로 전환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정신건강복지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헌법 제12조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

위와 같이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보호입원 전환 과정에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원적합성위원회는 그 입원과정이 적법하다고 심사하였다. 이에 유사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입원적합성심사위원장에게 자의 입원 또는 동의입원이 보호입원으로 전환되는 사례에 대하여 절차위반 여부 등을 철저히 심사할 것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